

## 2010년도 조정·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 ■ 조정사건전년 대비 40.0% 증가

2010년 한해 동안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역대 최고인 2,205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9년도에 비해 40.0%(632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 증가폭 64.9%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2년 연속 600건 이상의 청구가 추가로 접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9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이 전체 청구의 3분의 2 차지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사건 비율이 전체 사건수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전년의 181건보다 약 4.6배 이상 증가한 841건을 기록했으며, 소위 언론사닷컴이 포함된 인터넷신문의 경우도 2009년의 233건보다 약 2.4배 이상 증가해 567건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신문이나 방송이 전체 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었다.

### ■ 피해구제율은 79.1%로 역대 최고

2010년도 피해구제율은 79.1%로 역대 최고이다. 피해구제율은 2007년도 64.8%의 피해구제율을 보이다 2008년도(72.9%)를 기점으로 70.0%대를 넘어섰고, 2009년에는 73.9%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피해구제율이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은 조정 절차를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 인터넷 접수, 주요 접수방법으로 정착

인터넷 접수가 1,205건(54.6%)으로 나타나 전년도 50.0%를 넘어선 이래 2년 연속 전체 접수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터넷 접수는 우편이나 방문과 같은 다른 접수방법에 비해 편리성과 신속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신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주요한 접수방법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 ■ 네이버가 203건으로 가장 많아

매체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두드러졌는데 네이버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과 네이버가 각각 189건과 163건의 사건 수를 보여 그 다음을 이었다. 방송 중에서는 한국방송공사가

KBS-1,2TV와KBS지역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총 69건의사건 수를 보여 가장 많았고, 중앙일간지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3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인터넷뉴스서비스의피해구제율 가장높아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은 인터넷뉴스서비스가 88.7%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인터넷신문과뉴스통신이 높았고, 신문이나방송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기반 매체가 인쇄매체나방송등 기존 미디어에 비해 기사삭제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 ■ 손해배상사건 최고 조정액 1,500만원

손해배상사건 중 최고 조정액은 프라이버시 침해관련 사건으로 1,500만원이었다. 그외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660만원, 최저 100만원, 평균 220만원 정도였으며,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300만원, 최저 15만원, 평균 106만원 정도였다.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1,500만원, 최저 50만원, 평균 533만원으로, 음성권 침해는 15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 ■ 중재사건 77건 접수

2010년 중재사건은 77건으로, 전년도의 111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그러나 중재사건은 2006년도 도입 이후 2008년까지는 10건 안팎의 저조한 사건 수를 기록하다 2009년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도 적지 않은 사건 수를 나타냈다.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54건으로 70.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사제공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조정성립되거나 피해구제될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즉 중재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의사를 비교적 쉽게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 시정권고소위원회, 자살관련 보도 등 총 284건의 시정권고 결정

시정 권고소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총 746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284건의 법의 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09년 253건에 비해 31건(12.3%) 증가한 것으로, 자살자 신원공개, 자살방법 상세묘사 등 자살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결정건수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에 대한 시정 권고 결정건수는 줄었다.

## ◇ 2010년 조정 및 중재신청 처리현황 ◇

## 제1장 조정신청 현황

## 1. 연도별 현황

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2,205건의 조정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이는 위원회 설립 이래 최다건수로, 전년도에 비해 40%(632건) 증가한 결과이다.

위원회 사건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1,000건 내외의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포털과 언론사닷컴, IPTV 등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2009년부터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

연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조정사건 건수	1,087	1,043	954	1,573	2,205
	전년대비 증감	204	-44	-89	619	632

## 2. 중재부별 현황

중재부별 현황으로는 1,627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한 서울중재부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고, 경기중재부 120건(5.4%), 경남중재부 89건(4.0%), 광주중재부 77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경우 신문사와 방송사가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한 포털 등의 인터넷뉴스 서비스사 및 인터넷신문사의 소재지도 대부분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1-2)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서울	607	63.6	1,173	74.6	1,627	73.8
부산	24	2.5	15	1.0	59	2.7
대구	30	3.1	35	2.2	31	1.4
광주	46	4.8	72	4.6	77	3.5
대전	32	3.4	42	2.7	42	1.9
경기	108	11.3	103	6.5	120	5.4
강원	15	1.6	26	1.6	28	1.3
충북	19	2.0	36	2.3	35	1.6
전북	39	4.1	33	2.1	49	2.2
경남	27	2.8	26	1.6	89	4.0
제주	7	0.7	12	0.8	48	2.2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 3. 청구권별 현황

2010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2,205건의 청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211건(54.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손해배상청구 773건(35.1%), 반론보도청구 171건(7.8%), 추후보도청구 50건(2.3%) 순이었다.

전체 조정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으며, 3년간 평균비율이 50.4%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는 작년에 비해 9.3% 낮아진 것임은 여전히 차순위의 높은 청구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정보도청구와 더불어 위원회 전체 조정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청구 현황

연도 청구명	2008		2009		2010		합계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정정	481	50.4	691	43.9	1,211	54.9	2,383	50.4
반론	127	13.3	142	9.0	171	7.8	440	9.3
추후	22	2.3	41	2.6	50	2.3	113	2.4
손배	324	34.0	699	44.4	773	35.1	1,796	38.0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4,732	100.0

### 4.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0년도에는 전체 조정사건 중 개인에 의한 청구가 1,284건(58.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은 회사는 416건(18.9%)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어서 일반단체 293건(13.3%), 지지체 및 공공단체가 124건(5.6%), 국가기관이 66건(3.0%), 교육기관 20건(0.9%), 종교단체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회사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 언론사가 각각 329건(14.9%)과 87건(3.9%)을 차지했다.

〈표 1-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연도 신청인유형	2008		2009		2010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개인	523	54.8	847	53.8	1,284	58.2
국가기관	32	3.4	74	4.7	66	3.0
지지체·공공단체	52	5.5	64	4.1	124	5.6
일반단체	180	18.9	341	21.7	293	13.3
종교단체	11	1.2	4	0.3	2	0.1
회사	142	14.8	212	13.5	416	18.9
교육기관	14	1.5	31	2.0	20	0.9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 5. 매체유형별 현황

매체유형별 현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사건 비율이 63.8%로서 전체 조정사건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7.5%나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인터넷매체 중 포털을 포함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반만에 위원회 전체 조정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이나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언론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인 매체유형별 조정사건 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841건(38.1%), 인터넷신문 567건(25.7%), 신문 540건(24.5%), 방송 189건(8.6%), 뉴스통신 42건(1.9%), 잡지 24건(1.1%) 순이었다.

〈표 1-5〉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현황

신청인유형	연도		2008		2009		2010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신문	554	58.1	632	40.2	540	24.5		
방송	189	19.8	459	29.2	189	8.6		
잡지	12	1.3	27	1.7	24	1.1		
뉴스통신	33	3.5	38	2.4	42	1.9		
인터넷신문	157	16.5	233	14.8	567	25.7		
인터넷뉴스서비스			181	11.5	841	38.1		
기타	9	0.9	3	0.2	2	0.1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매체유형별 조정사건을 세분하여 보면 신문의 경우, 지방일간지 대상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간신문과 중앙일간지가 많았다. 방송의 경우는 지상파방송이 종합유선방송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 참고로,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사건 수의 경우 신문과 방송, 잡지, 뉴스통신 등 소위 올드 미디어 대상사건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게 나타났다.

〈표 1-6〉 매체유형별 현황

매체유형 조정 사건건수	신문			방송			잡지	뉴스	인터넷 통신	인터넷뉴스 신문	기타 서비스
	중앙 일간지	지방 일간지	주간 신문	지상파		종합유선 방송					
				TV	라디오						
2,205	159	197	184	172	3	14	24	42	567	841	2
100.0(%)	7.2	8.9	8.3	7.8	0.1	0.6	1.1	1.9	25.7	38.1	0.1

## 6. 침해유형별 현황

조정사건을 주된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1,995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90.5%를 차지했으며, 초상권 109건(4.9%), 신용훼손 20건(0.9%), 프라이버시권 20건(0.9%), 성명권 4건(0.2%), 음성권 3건(0.1%)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 중 두 번째를 차지한 초상권의 경우, 전체 침해 유형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초상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해마다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1-7〉 최근3년간 침해유형별 현황

침해유형	연도		2008		2009		2010	
	연도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명예		523	54.8	847	53.8	1,284	58.2	
신용		32	3.4	74	4.7	66	3.0	
초상권		52	5.5	64	4.1	124	5.6	
음성권		180	18.9	341	21.7	293	13.3	
성명권		11	1.2	4	0.3	2	0.1	
프라이버시		142	14.8	212	13.5	416	18.9	
기타		14	1.5	31	2.0	20	0.9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 7.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 분류

침해유형 중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을 제외한 인격권 침해, 즉 초상권이나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등 기타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청구된 사건 136건을 침해원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초상이나 음성을 공표한 경우가 82건(60.3%)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보도한 경우가 42건, 보도내용과 무관하게 자료화면으로 초상 등을 이용한 경우가 2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8〉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 분류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 분류	조정사건 건수	비율(%)
동의 없이 무단공표	82	60.3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	42	30.9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2	1.5
기타	10	7.4
계	136	100.0

## 8. 조정대상보도의분야

조정대상보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나 고발등을 다룬 사회분야가 1,417건(64.3%)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스포츠연예 분야가 206건(9.3%), 정치·선거 분야가 179건(8.1%), 경제·산업 분야가 114건(5.2%), 보건·복지 분야가 67건(3.0%), 노조관련 분야가 52건(2.4%), 미디어관련 분야가 46건(2.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9〉 조정대상보도의분야별 조정사건수

조정대상기사분야	조정사건건수	비율(%)
정치·선거	179	8.1
국방·외교	8	0.4
경제·산업	114	5.2
사회(사건/사고/고발)	1,417	64.3
보건·복지	67	3.0
스포츠·연예	206	9.3
레저·생활	24	1.1
환경	26	1.2
종교	19	0.9
노조	52	2.4
교육	38	1.7
미디어	46	2.1
기타	9	0.4
계	2,205	100.0

## 9. 조정대상보도의 유형

신문잡지 등의 조정대상기사를 보도의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스트레이트기사가 1,702건으로 86.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외 사설이나 논단·칼럼, 비평등 소위의견 기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도 88건(4.5%)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견의 전제가 된 사실적 주장에 대해 신청인이 정정이나 반론등을 청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 사진 기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도 16건을 차지했다.

〈표 1-10〉 조정대상 보도 유형별 현황

조정대상 기사 유형	조정사건 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1,702	86.2
사설	27	1.4
논단 및 칼럼	46	2.3
인터뷰	22	1.1
외부필자 기고	22	1.1
비평	15	0.8
탐사·심층·기획보도	112	5.7
사진	16	0.8
기타	13	0.7
계	1,975	100.0

※ 방송 및 방송관련 포털 제외

〈표 1-11〉 조정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현황

방송 장르	조정사건 건수	비율(%)
뉴스	172	74.8
시사고발	21	9.1
교양정보	28	12.2
연예스포츠	7	3.0
기타	2	0.9
계	230	100.0

방송의 경우 장르별로는 뉴스관련 보도가 172건으로 74.8%를 차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다음에 교양정보 관련 프로그램이 28건(12.2%),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21건(9.1%), 연예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7건(3.0%) 순으로 나타났다.

## 10. 접수 유형별 현황

2010년 한해 신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접수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접수로 나타났다. 2010년 인터넷 접수 건수는 1,205건(54.6%)으로 나타나 신청인들은 우편이나 방문과 같은 다른 접수방법에 비해 편의성과 신속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접수는 2009년(904건, 57.5%)과 마찬가지로 전체 접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조정신청의 주요한 접수방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표 1-12〉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접수 유형	연도		2008		2009		2010	
	연도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조정사건 건수	비율(%)	
방문		354	37.1	429	27.3	483	21.9	
우편		233	24.4	225	14.3	233	10.6	
인터넷		358	37.6	904	57.5	1,205	54.6	
구술		9	0.9	15	0.9	284	12.9	
계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1. 연도별 처리결과

2010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 사건은 2,205건으로 전년에 비해 40.1%가 증가, 최근 3년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1,131건(51.3%), 조정성립 630건(28.6%), 조정불성립결정 157건(7.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49건(6.7%), 기각137건(6.2%), 각하1건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하의 경우 2009년 575건(36.6%)에서 2010년에는 1,131건(51.3%)으로 그수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원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사건이 조정성립 등으로 처리됨에 따라 원 보도 언론사의 기사를 전제한 여러 포털사이트에서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포털을 상대로 한 사건이 자연스럽게 취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정불성립결정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기각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전체 조정사건의 약 6.7%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중재부의 결정에 동의한 건이 이의신청한 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건 당사자들은 중재부가 내리는 결정을 신뢰하여 이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 최근 3년간 처리결과 현황

구분 연도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100.0(%)	42.1	3.7	1.8	13.1	2.2	0.4	36.7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100.0(%)	34.2	4.2	2.5	5.6	16.3	0.6	36.6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100.0(%)	28.6	4.9	1.8	7.1	6.2	51.3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2 피해구제율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사건에서 기각,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그리고 불성립 또는 취하되었으나 피해구제(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등)가 된 경우를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피해구제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70%를 넘어섰고, 2009년에는 73.9%에 달했으며 2010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79.1%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피해구제율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된 언론사들이 점차 조정에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2-2〉 피해구제율 현황

조정사건 건수 [A]	가각 · 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 [C/(A-B)]
2,205	138	2,067	1,637	79.2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 / 조정건수

\*조정건수 = 조정사건 수 - 가각 · 각하건수

\*피해구제건수 = 조정성립건수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건 중 동의건수 + 취하건 중 피해구제건수 + 불성립결정 후 피해구제건수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에 대한이의신청 후 피해구제건수

### 3.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정정청구는 79.1%, 반론청구는 71.4%, 추후청구는 91.7%, 손해청구는 80.0%로 각각 조사되었다.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조정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쟁점이 명확하고, 판결문 등에 의해 그 입증의 용이하므로 언론사가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 80.0%는 예년에 비해 가장 높은 것이다.

〈표 2-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구분 연도	청구명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정정	481	220	18	9	60 (1)	8	2	164 (104)	72.8
	반론	127	56	6	1	12	7		45 (29)	75.8
	추후	22	11			2	2		7 (3)	70.0
	손배	324	115	11	7	51 (2)	4	2	134 (101)	72.0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정정	691	286	46	21	50	15	2	271 (180)	76.0
	반론	142	67	4	5	3	10	1	52 (36)	81.7
	추후	41	13			2		1	25 (24)	92.5
	손배	699	172	16	13	33	232	6	227 (121)	67.0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구분 연도	청구명	조정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감	각하		추하
				동의	이의					
2010	정정	1,211	337	74	20 (1)	87 (4)	66	1	626 (489)	79.1
	반론	171	52	10	1	13	31		64 (38)	71.4
	추후	50	23	1	1	1	2		22 (20)	91.7
	손배	773	218	24	18 (1)	56 (1)	38		419 (344)	8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 ( )안의숫자는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신청인 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100%를 보인 종교단체(2건)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8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가기관(77.3%)과 일반단체(74.7%), 회사(73.8%)의 순서로 높았다. 이에 반해 교육기관(60.0%)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69.1%)의 경우 60%대의 피해구제율을 보여 평균적인 피해구제율(79.2%)보다 상당히 낮았다. 국가기관의 피해구제율 역시 평균 피해구제율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조정성립률은 종교단체(2건, 100%)를 제외하고는 교육기관(55.0%), 일반단체(36.9%), 국가기관(33.3%), 회사(28.6%), 지자체 및 공공단체(26.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교육기관이 높고 지자체 및 공공단체가 낮았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구분 연도	신청인 유형	조정 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감	각하		추하
				동의	이의					
2008	개인	523	221	20	6	69 (3)		13	194 (142)	75.7
	국가기관	32	13	3	2	2			12 (9)	78.1
	지자체 공공단체	52	28	1		10	1		12 (5)	66.7
	일반단체	180	70	5	8	19	5		73 (47)	69.7
	종교단체	11	5						6 (5)	90.9
	회사	142	60	6	1	22	2	4	47 (29)	69.9
	교육기관	14	5			3			6	35.7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구분 연도	신청인 유형	조정 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추하	
				동의	이의						
2009	개인	847	243	15	22	42	240	10	275 [152]	68.7	
	단체	국가기관	74	32	6	3	2	2		29 [16]	75.0
		지자체 공공단체	64	27	5	1	3			28 [19]	79.7
		일반단체	341	139	21	4	22	12		143 [99]	78.7
		종교단체	4	4							100.0
		회사	212	78	17	6	17	3		91 [70]	78.9
		교육기관	31	15	2	3	2			9 [5]	71.0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개인	1,284	335	39	20 [2]	72 [4]	104	1	713 [605]	83.5	
	단체	국가기관	66	22	11	1	5			27 [18]	77.3
		지자체 공공단체	124	33	8	2	17	1		63 [44]	69.1
		일반단체	293	108	30	7	37	28		83 [60]	74.7
		종교단체	2	2							100.0
		회사	416	119	21	10	20 [1]	4		242 [163]	73.8
		교육기관	20	11			6			3 [1]	6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 (안의숫자는 조정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5.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료인이 98.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학생, 회사원, 군인·경찰, 문화예술인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경우 90.0% 이상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반면, 피해구제율이 낮은 순서를 살펴보면, 조정사건수가 적은 시민활동가(6건)와 법조인(6건)을 제외할 경우, 공공기관장의 피해구제율이 40.0%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으로 교육자 59.0%,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60.0%, 국회의원 65.5%로 타 신청인 직업유형에 비해 피해구제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2-5〉 신청인 개인 직업별 조정신청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직업	구분	조정 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국회의원		29	16	1	2	3			7 [2]	65.5
법조인		6	2			1	2		1	50.0
공무원		71	28	1	1	6 [1]			35 [29]	83.1
군인/경찰		98	35	6	4 [2]	1	3		49 [44]	91.6
기초광역단체장/의원		45	22	1	3	9			10 [4]	60.0
정당정치인		33	13						20 [16]	87.9
의료인		129	14	5			2		108 [106]	98.4
문화예술인		78	10	2					66 [59]	91.0
종교인		20	12			3	1		4 [4]	84.2
회사원		84	48	1		3	21		11 [9]	92.1
언론인		33	9			2	20		2 [2]	84.6
교육자		91	33		3	10	8		37 [16]	59.0
개인사업가		146	38	13	2	14 [2]	18		61 [43]	75.0
연예인		2						2		
학생		182			2		17		163 [160]	97.0
시민활동가		6	2			2			2	33.3
공공기관장		10	2						8 [2]	40.0
조합대표협회장		31	12	4		5			10 [8]	77.4
기타		190	39	5	3	13 [1]	12	1	117 [101]	82.5
계		1,284	335	39	20 [2]	72 [4]	104	1	713 [605]	83.5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88.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인터넷신문이 80.7%, 뉴스통신이 80.0%, 신문이 70.9%, 방송이 60.9%, 잡지가 5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기반 매체가 지면이나 시간상의 제약이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구분 연도	매체 유형	조정 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신문	554	241	22	7	69 (3)	5	210 (145)	74.9	
	방송	189	77	2	5	35	9	61 (27)	58.9	
	잡지	12	5		1	2		4 (1)	50.0	
	뉴스통신	33	15	1	2			15 (15)	93.9	
	인터넷 신문	157	62	8	2	17	5	4	59 (49)	80.4
	기타	9	2	2		2	2		1	57.1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신문	632	253	40	24	50	11	3	251 (150)	71.7
	방송	459	89	5	7	20	230	3	105 (46)	61.9
	잡지	27	18			2			7 (7)	92.6
	뉴스통신	38	12	2			4		20 (18)	94.1
	인터넷 신문	233	118	3	5	14	6		87 (58)	78.9
	인터넷뉴스 서비스	181	47	16	3	2	6	4	103 (82)	84.8
	기타	3	1						2	33.3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신문	540	261	15	14	64 (2)	25		161 (87)	70.9
	방송	189	84	10	6	41	14	1	33 (12)	60.9
	잡지	24	8	3		10 (1)			3	50.0
	뉴스통신	42	10				7		25 (18)	80.0
	인터넷 신문	567	190	12	14	29 (2)	43		279 (219)	80.7
	인터넷뉴스 서비스	841	77	69	6 (2)	13	48		628 (555)	88.7
	기타	2							2	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7.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프라이버시침해가 88.9%, 초상권 침해가 84.5%, 명예훼손이 79.0%로 각각 나타나 피해구제율이 80.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반면 성명권 침해의 경우 50.0%, 음성권 침해는 66.7%, 신용훼손의 경우는 68.4%로 나타나 평균 피해구제율(79.2%)에 비해 낮았다.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침해 유형의 피해구제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침해여부가 명예훼손등에 비해 분명하고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날로 제고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7〉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구분 연도	침해 유형	조정 사건 간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같은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추하
				동의	이의					
2008	명예	899	375	35	16	122 (3)	18	4	329 (222)	72.4
	신용	6	3						3 (1)	66.7
	초상권	29	11		1	3	1		13 (10)	75.0
	음성권	10	5						5 (4)	90.0
	성명권	4	4							100.0
	프라이버시	3	3							100.0
	기타	3	1				2			100.0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명예	1,457	498	63	35	86	249	10	516 (318)	73.4
	신용	6	4						2 (2)	100.0
	초상권	56	20	1	4	2			29 (25)	82.1
	음성권	5	4						1	80.0
	성명권	1	1							100.0
	프라이버시	18	5	1			6		6(4)	83.3
	기타	30	6	1			2		21 (12)	67.9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명예	1,995	591	107	39 (2)	144 (5)	87	1	1,026 (801)	79.0
	신용	20				2	1		17 (13)	68.4
	초상권	109	27	1		10	12		59 (54)	84.5
	음성권	3	1		1				1 (1)	66.7
	성명권	4							4 (2)	50.0
	프라이버시	20	3	1		1	11		4 (4)	88.9
	기타	54	8					26	20 (16)	85.7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에 같은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8. 매체별 조정사건 건수 및 처리결과

매체별로 사건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인 네이버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종류  
의 매체인 다음과 네이버가 각각 189건과 163건의 사건수를 보였다. 중앙일간지 중에서는 조선일  
보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각각 23건과 15건의 건수를 나  
타났다. 방송 중에서는 한국방송공사가 KBS-1,2TV와 KBS지역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총 69건  
의 건수를 보여 가장 많았고, 문화방송(MBC)의 경우 중앙이 25건, 지역이 26건의 건수를 보였다.  
인터넷신문 중에는 디지털조선일보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노컷뉴스가 22건, 한  
겨레닷컴이 17건, 오마이뉴스가 1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2-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매체 유형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 예	신 용	초 상 권	음 성 권	성 명 권	프 라 이 버 시	기 타	조정 상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상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중앙 일간 지	경향신문	15	15							6					9
	국민일보	2	1		1					1					1
	내일신문	4	4							4					
	동아일보	5	3		2					1	2				2
	문화일보	9	7		2					2	1	2	3		1
	서울신문	7	7												7
	세계일보	6	6							5					1
	조선일보	30	29					1		17	3	1	5		4
	한겨레	11	10				1			3	2	1			5
	한국일보	23	23							10	3		3		7
	소계	12	11						1	8					4
	지방 일간 지	아시아일보	1	1											
내외일보		4	4							2			2		
아시아투데이		1			1					1					
선경일보		1	1												1
현대일보		1	1												1
신이일보		3	3												3
국제신문		7	7							5					2
부산일보		4	4							2		1	1		
경상일보		2	2												2
울산신문		2	2												2
경북매일		1	1												1
대구·경북 매일신문		3	2						1	1		1			1
영남일보	2	2						2	1			2			
영남일보	2	2							2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간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 예	신 용	초 상 권	음 성 권	성 명 권	프 라 이 비 시	기 타	조 정 성 립	자 권 조 정 결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방 일간 지	일간대경북	1	1							1						
	경도일보	3	3							3						
	광주매일	2	2								1				1	
	광주일보	1	1													1
	무등일보	3	3							2						1
	전광일보	5	5								2	3				
	전남매일	2	2							1						1
	전남일보	2	2									1				1
	호남매일	1	1							1						
	호남신문	1	1													1
	호남일보	1	1							1						
	광남일보	6	6							3	2					1
	남도일보	4	4							1						3
	일간희망보	1	1													1
	희망중앙매일	1	1													1
	대전일보	2	2							2						
	충도일보	3	2					1		2			1			
	충청신문	2	2							2						
	중앙매일	2	2							2						
	대전투데이	1	1													1
	충청시대	1	1							1						
	경기도민일보	4	4							3						1
	경기신문	1	1							1						
	경기일보	3	3									2				1
	경도신문	2	2							2						
	경인일보	4	4							2	2					
	수도권일보	4	4							1		2				1
	시대일보	2	2													2
	우리일보	4	4							1						3
	인천일보	1	1													1
	중부일보	6	6							2						4
	전국매일	5	5							1		3				1
	수도일보	2	2							2						
	인천신문	1	1													1
	오늘신문	2	2							1						1
	인천경향	2	2							1						1
경인종합일보	1	1							1							

매체이칭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 상립	직면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방 일간지	강원	강원도민일보	1	1							1				
	강원일보	2	2						2						
	충북	충북일보	1	1											1
		충청일보	2	1				1				1			1
		한빛일보	3	3						3					
		충청타임즈	7	7						5					2
		충청투데이	1	1						1					
		대전북신문	5	5						4					1
	전북	전라일보	1	1						1					
		전북도민일보	1	1											1
		전북일보	5	5						1		2			2
		전북중앙신문	2	2						2					
		전주매일	2	2						2					
		전북매일	2	2											2
		전북연합신문	2	2											2
		전주일보	1						1	1					
		새만금신문	2	2											2
		경남	경남도민일보	9	9						2	2			
	경남매일		4	4						4					
	경남신문		4	4						4					
울산매일	1		1						1						
경남연합일보	2		2						2						
매일경남	4		4						3					1	
창원일보.com	2		2						2						
제민일보	1		1								1				
제주	제주일보	2	2						2						
	한리일보	4	4						4						
	소계	197	190		1			2	4	100	8	18	7	64	
경제지	매일경제	5	5						1			2		2	
	서울경제	1	1											1	
	한국경제	9	9						1		4			4	
	헤럴드경제	3	3						2					1	
	머니투데이	6	6						2			2		2	
	소계	24	24						6		4	4		10	
스포츠지	스포츠포스트	2	2						2						
	소계	2	2						2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 예	신 영	초 상 권	인 신 명 권	성 명 권	표 의 권	기 타	조정 상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특수 일간 지	전자신문	2	2							1					1
	이투데이신문	2	2									2			
	소계	4	4							1		2			1
무료 일간 지	데일리노컷뉴스	4	4							4					
	데일리포커스	1			1										1
	소계	5	4		1					4					1
중 앙 방 송	KBS-1,2TV	2	2							2					
	KBS-1TV	32	27	3	1	1			9	3	5	6	1	8	
	KBS-2TV	10	9		1					5		3	2		
	MBC-TV	25	18		6			1		15	1	3	1		5
	SBS-TV	21	18			1			2	6	5	2	3		5
	EBS-R	1	1								1				
	소계	91	75	3	8	2		1	2	37	10	13	12	1	18
지 방 방 송	원주KBS-1TV	2	2									2			
	춘천KBS-1TV	1	1							1					
	대전KBS-1TV	2	2							2					
	대구KBS-1TV	5	5									5			
	울산KBS-1TV	2	2												2
	창원KBS-1TV	2	2							2					
	전주KBS-1TV	1	1							1					
	광주KBS-1TV	4	4								2	2			
	제주KBS-1TV	6	6							6					
	부산MBC-TV	3	3									3			
	강릉MBC-TV	1				1				1					
	청주MBC-TV	5	5							5					
	대전MBC-TV	1						1					1		
	포항MBC-TV	1			1					1					
	마산MBC-TV	6	6							4	2				
	울산MBC-TV	2	2									2			
	진주MBC-TV	2	2								2				
	목포MBC-TV	1	1												1
	제주MBC-TV	2	2							2					
	대전MBC-R	2	2							2					
광주BBS-R	2	2							1					1	
춘천MBC-R	1	1							1						
소계	54	51		1	1			1	29	6	14	1		4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간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 상립	직면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 주간 신문	함안신문	9	9							4	3				2
	남해신문	2	2							2					
	더함안신문	6	6							6					
	창녕신문	2	2												2
	함안뉴스	2	2							2					
	경서신문	2	2							2					
	함안정통신문	4	4							3	1				
	고성미래신문	2	2							2					
	소계	102	99					3		46	7	26	1		22
특 수 주 간 신 문	수산신문	1	1							1					
	교수신문	1							1						1
	기독신문	1	1							1					
	미디어오늘	6	5						1	5	1				
	전국아파트신문	1	1								1				
	종합법률신문	2	2							2					
	도시개발신문	1	1							1					
	목양신문	2	2										1		1
	도시재생신문	2	2							2					
	한국축구신문	4	4							2		2			
	한국농정	1	1									1			
	기독교성경신문	3	3							3					
	이천타임즈	2	2									2			
	일요저널	2	2												2
	구로오늘신문	2	2							2					
	한기여총신문	2			2					2					
	진천군민신문	2	2							2					
	한국대학신문	1	1							1					
	오마이건설뉴스	4	4												4
	경남기독신문	1	1							1					
	법보신문	1							1				1		
	금산진약신문	1	1												1
뉴코리아포스트	3	3							2					1	
연합경찰	2	2							2						
건설교통환경신문	1	1												1	
한국기독교공보	2	2									2				
부천신문	3	3							3						



매체명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상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 상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뉴스엔		3	3												3
디시뉴스		2	2												2
TVDaily		3	3												3
서울e조은뉴스		2	2												2
우리안산넷		1	1							1					
스타뉴스		1	1												1
데일리경강뉴스		1	1												1
인벤		1							1						1
아크로팬		1	1												1
고성인터넷뉴스		3	3							2					1
가제인터넷신문		2	2												2
한국모바일방송		4	4												4
디지털화순뉴스		3	3							2		1			
의정부인터넷뉴스		1	1												1
경원일보		2	2												2
용인일보		1	1												1
인터넷뉴스 신문고		2	2							2					
e중앙뉴스		2	2							2					
통영타임즈		2	2												2
나눔뉴스		2	2												2
뉴스와이어		2	2							2					
아이비타임즈		2	2												2
OSEN		2	2												2
희망뉴스		2	2												2
모모뉴스		2	2												2
빅뉴스		2	2								2				
호남뉴스 일반지		2	2												2
e파이낸셜신문		2	2							2					
엠펙아트		1	1												1
뉴스토마토		1	1												1
한국대문학신문		2	2								2				
뉴스페이		2	2									2			
데일리안 강원		2	2									2			
데일리안		3	3							2		1			
브레이크뉴스		4	3						1				1		3
프런티어타임즈		1	1												1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표 의	신 영	초 상 권	애 성 권	표 의 명 성	표 의 인 사	기 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추 하
인 터 넷 신 문	e뉴조	2	2												2
	폴리뉴스	4	3						1	2			1		1
	마이데일리	7	5	1	1										7
	메디컬투데이	5	4		1					2					3
	EBN	2							2				2		
	아이뉴스24	1	1										1		
	메디케이투뉴스	1	1												1
	생각만드는신문	7	7							2					5
	에이블뉴스	2	2												2
	코메디닷컴	2	2							2					
	미디어스	2	2							1	1				
	폴리스타임즈	1	1												1
	컨슈머타임즈	3	3							2					1
	메디파나뉴스	2	2										1		1
	문화저널	3	2		1							2			1
	스포츠서울TV	2	1		1								1		1
	서울신문NTN	2	2												2
	이슈제주	2	2							2					
	제주투데이	3	3							2					1
	광주투데이	2	2												2
	제주의 소리	7	7							6					1
	시티뉴스	2	2							2					
	굿데이스포츠	4	3		1										4
	세종뉴스	1	1							1					
	동이닷컴	6	6								1		2		3
	디지털조선일보	23	21						2	7	2	1	5		8
	한겨레닷컴	17	16							1	4	2		3	8
	아이투데이닷컴	9	7		1					1			1		8
	한경닷컴	6	6									2			4
	조인스닷컴	15	12					1		2	2	2	1	1	9
	인터넷한국일보	8	7							1	6				2
	인터넷매일투데이	7	4	2	1								2		5
파이낸셜뉴스닷컴	5	5							2					3	
스포츠조선닷컴	2	2												2	
ISPLUS	1	1												1	
매경닷컴	14	11		1			1		1	2		1		10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조정 사건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조정 상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충청세종신문닷컴	2	2							2					
	인터넷국제신문	2	2												2
	인터넷인제신문	2	2									2			
	인터넷제외동포신문	1							1						1
	인터넷소통신문	1	1							1					
	사새NLive닷컴	2	2												2
	내외TV	3	3							2					1
	인터넷코레타이즈	1	1												1
	인터넷충청일보	2	2							2					
	뉴코리아포스트닷컴	2	2							2					
	인터넷내외일보	2	2							2					
	인터넷한대일보	2	2							2					
인터넷일요신문	1	1							1						
소계	567	513	3	19		2	3	27	190	26	29	43		279	
인 터 넷 뉴 스 서 비 스	네이버	203	176	3	15			3	6	24	13	3	16		147
	다음	189	172	3	12			1	1	21	10	3	10		145
	아후	80	71	2	5			1	1		10		5		65
	파란	82	71	2	9					3	8		3		68
	네이트	163	146	2	12			1	2	17	12	3	7		124
	구글	29	24	2				1	2		12		2		15
	드림 위즈	36	32		4						3				33
	코리아닷컴	1	1												1
	천리안	2	2												2
	MSN 코리아	5	5												5
	라이코스	1	1												1
	하나포스	9	9								2				7
	고	1	1							1					
	로지아닷컴	2	2												2
	iMBC	14	8		5				1	8	1		2		3
	SBSi	3	3								2				1
	KBSi	12	11		1					3	1	2	3		3
	BBS 불교방송	1	1												1
	디지털와이티엔	6	4		2							2			4
	와우넷	1	1												1
인터넷EBS	1	1								1					
소계	841	742	14	65			7	13	77	75	13	48		628	
기 타	iKNN	2	2												2
	소계	2	2												2
총계	2,205	1,995	20	109	3	4	20	54	630	149	157	137	1	1,131	

### 9.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를 서울과 지역으로 나누어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81.6%, 지역은 72.3%로 집계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중재부가 9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제3중재부와 대전중재부가 각각 90.2%와 89.2%를 나타내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중재부의 조정성립률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북중재부가 65.7%, 경남중재부가 64.0%를 나타냈다. 서울중재부의 경우 조정성립률은 22.2%로 낮고, 취하율은 57.5%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서울의 경우, 원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에 대한 조정성립의 결과, 후속보도가 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포털 등이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함에 따라 신청인이 포털에 대한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 역시 전체 149건 가운데 약 85.9%인 128건이 서울중재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서울 외 지역중재부에서 내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경남중재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중재부 7건, 경기중재부 2건이었다. 기각 및 각하결정의 경우도 138건 가운데 126건이 서울중재부에서 이루어졌다.

〈표 2-9〉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

연도	구분 중재부	조정 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추 하	
				동 의	이 의					
2008	서울	103	31	15	3	20	3	4	27 (17)	65.6
	서울2	95	47	4		20 (1)	4		20 (14)	72.5
	서울3	112	51			2	3		56 (44)	87.2
	서울4	104	46	5	3	5	4		41 (28)	79.0
	서울5	101	48		2	12 (1)	2		37 (30)	79.8
	서울6	92	45		4	9	1		33 (23)	74.7
	소계	607	268	24	12	68 (2)	17	4	214 (156)	76.8
	부산	24	5		1	10 (1)	1		7 (2)	34.8
	대구	30	18						12 (5)	76.7
	광주	46	14	1	3	12			16 (10)	54.3
	대전	32	12			2			18 (10)	68.8
	경기	108	29	1	1	23			54 (39)	63.9
	강원	15	11	2		1			1 (1)	93.3
	충북	19	10						9 (4)	73.7
	전북	39	19	3		5			12 (5)	69.2
	경남	27	9	4		4	3		7 (5)	75.0
	제주	7	7							100.0
	소계	347	134	11	5	57 (1)	4		136 (81)	66.2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연도	구분 중재부	조정 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9	서울1	178	47	23	9	1	49	1	48 [42]	87.5
	서울2	173	53	5	1	11	46	4	53 [23]	65.9
	서울3	180	72	9		3	44		52 [48]	94.9
	서울4	177	39	17	10	14	35	1	61 [46]	72.3
	서울5	174	55			11	39		69 [48]	76.3
	서울6	188	78	2	3	9	7	2	87 [34]	63.7
	서울7	103	22	7	2		36		36 [29]	86.6
	소계	1,173	366	63	25	49	256	8	406 [270]	76.9
	부산	15	8			2	1		4 [4]	85.7
	대구	35	18	1	2				14 [2]	60.0
	광주	72	36		2	16			18 [13]	68.1
	대전	42	20						22 [16]	85.7
	경기	103	32	2	9	4			56 [24]	56.3
	강원	26	4						22 [19]	88.5
	충북	36	9			10		2	15 [8]	50.0
	전북	33	18		1	4			10 [2]	60.6
	경남	26	15			3			8 [3]	69.2
	제주	12	12							100.0
	소계	400	172	3	14	39	1	2	169 [91]	67.0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서울1	258	41	48	8		34		127 [109]	88.4
	서울2	234	85			11	17		121 [104]	87.1
	서울3	241	75	12	3 [2]	5	16	1	129 [113]	90.2
	서울4	225	32	8	12	10 [1]	3		160 [136]	79.7
	서울5	215	27	10	2	24	6		146 [104]	67.5
	서울6	238	74	23	1	6	9		125 [92]	82.5
	서울7	216	27	1		20	40		128 [101]	73.3
	소계	1,627	361	102	26 [2]	76 [1]	125	1	936 [759]	81.6
	부산	59	13			13	1		32 [19]	55.2
	대구	31	16			8 [1]	2		5 [1]	62.1
	광주	77	20	3	4	18 [2]	1		31 [14]	51.3
	대전	42	29				5		8 [4]	89.2
	경기	120	44		2	17			57 [48]	76.7
	강원	28	9			15 [1]			4 [4]	50.0
	충북	35	23			4	3		5 [3]	81.3
	전북	49	22			5			22 [14]	73.5
	경남	89	57	4	8				20 [14]	84.3
	제주	48	36			1			11 [11]	97.9
	소계	578	269	7	14	81 [4]	12		195 [132]	72.3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 (\*1)안익숫자는 조정성립·조정에 같은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1. 손해배상청구 건수 및 처리결과

2010년 접수된 2,205건의 청구별 현황을 보면 정정보도청구 1,211건(54.9%), 손해배상청구 773건(35.1%), 반론보도청구 171건(7.8%), 추후보도청구 50건(2.3%) 순으로 나타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정정보도청구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청구별 조정신청 현황은 <표 1-3> 참조). 2010년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2009년의 699건보다 74건이 증가한 수치이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는 약 9%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으로서는 2009년 KBS-2TV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의 '투저 발언' 과 관련하여 261건의 손해배상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례가 2010년에는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 최근3년간 손해배상청구사건수 및 비율

연도	구분	전체 조정사건수	손해배상청구사건수	비율(%)
2008		954	324	34.0
2009		1,573	699	44.4
2010		2,205	773	35.1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취하 54.2%, 조정성립 28.2%, 조정불성립 결정 7.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5.4%, 기각 4.9% 순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에는 손해배상청구 기각률이 4.9%로 전년의 33.2%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상담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안내하여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청구사건 취하율이 5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정이나 반론과 함께 병합청구된 경우 정정이나 반론으로 합의되면 손해배상은 취하하는 경우가 많거나, 초상권·음성권 침해사건의 경우 그 침해여부가 비교적 명확히 가려지고 조정액 선례가 많이 있어 언론사가 신청인 측과 기일전에 접촉하여 사건을 해결하면 취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성립률은 2009년에 비해 3.5% 포인트 높아진 28.2%를 기록했으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해구제율은 2009년에 비해 13% 포인트나 높아져 무려 80.0%라는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다.

〈표 3-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처리결과

구분 연도	조정사건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324 (100)	115 (35.5)	11 (3.4)	7 (2.2)	51[2] (15.7)	4 (1.2)	2 (0.6)	134[101] (41.4)	72.0
2009	699 (100)	172 (24.7)	16 (2.1)	13 (1.7)	33 (4.7)	232 (33.2)	6 (0.9)	227[121] (32.3)	67.0
2010	773 (100)	218 (28.2)	24 (3.1)	18[1] (2.3)	56[1] (7.2)	38 (4.9)		419[344] (54.2)	80.0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 2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6,500만원으로 다른해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조정액은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조정액 평균은 168만원, 중앙액은 100만원으로, 평균액과 중앙액 모두 작년보다 5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액(빈도가 가장 많은 배상액)은 100만원(10 회)이었으며, 이어 50만원(4 회), 200만원 및 15만원(각 3회) 등이었다. 고액순의 빈도를 보면, 1,500만원 1건, 660만원 1건, 300만원 2건 등이었다.

〈표 3-3〉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구분 연도	청구액				조정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8	110,000	10,000,000,000	185,920,574	20,000,000	300,000	10,000,000	3,331,250	2,750,000
2009	100	50,000,000,000	221,393,861	20,000,000	120,000	30,000,000	3,594,103	2,000,000
2010	100	10,000,000,000	65,993,749	20,000,000	150,000	15,000,000	1,832,759	1,000,000

손해배상 조정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원에서 200만원미만이 37.9%로 가장 많았다. 200만원에서 500만원미만의 경우,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반면 100만원미만의 경우는 늘어났다. 500만원 이상의 경우도 다소 줄었다.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약간 감소하는 분포를 보였다.

〈표 3-4〉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연도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계
2008	3 (9.4)	9 (28.1)	11 (34.4)	6 (18.8)	3 (9.4)	32 (100.0)
2009	6 (15.4)	9 (23.1)	16 (41.0)	4 (10.3)	4 (10.3)	39 (100.0)
2010	9 (31.0)	11 (37.9)	7 (24.1)	1 (3.4)	1 (3.4)	29 (100.0)
계	18 (18.0)	29 (29.0)	34 (34.0)	11 (11.0)	8 (8.0)	100 (100.0)

\* ()안의 숫자는 %

### 3. 침해유형별 조정액 현황

침해유형별 조정액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660만원, 최저 100만원, 평균 220만원 정도였으며,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300만원, 최저 15만원, 평균 106만원 정도였다.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1,500만원, 최저 50만원, 평균 533만원으로, 음성권 침해는 15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표 3-5〉 손해배상사건 침해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0. 1. 1. ~ 2010. 12. 31, 단위 원)

침해유형	조정액	인용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초반액
명예훼손		8	1,000,000	6,600,000	2,200,000	1,500,000	1,000,000
초상권		18	150,000	3,000,000	1,061,765	1,000,000	1,000,000
음성권		1			1,500,000		
프라이버시권		3	500,000	15,000,000	5,333,333	500,000	500,000

### 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627건(81.1%)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 97건(12.5%), 프라이버시 침해 20건(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정이나 반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상권·음성권·성명권·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 대부분 손해배상청구사건임을 알 수 있다.

침해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사건 자체가 3건에 불과한 음성권(33.3%)을 제외하면, 명예훼손(30.6%), 초상권(21.6%), 프라이버시권 침해(1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프라이

버시권 침해 20건 중 55.0%에 해당하는 11건이 기각되었는데, 이는 다수포털을 상대로 신청된 한 사건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표3-6〉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유형별 처리결과현황

(2010. 1. 1. ~ 2010. 12. 31.)

침해 유형	구분 조정사건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상립	조정에 같은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627 (100)	192 (30.6)	39 (6.2)	44 (7.0)	20 (3.2)		332 (53.0)
신용훼손	8 (100)			1 (12.5)			7 (87.5)
초상권	97 (100)	21 (21.6)	1 (1.0)	10 (10.3)	6 (6.2)		59 (60.8)
음성권	3 (100)	1 (33.3)	1 (33.3)				1 (33.3)
성명권	4 (100)						4 (100.0)
프라이버시	20 (100)	3 (15.0)	1 (5.0)	1 (5.0)	11 (55.0)		4 (20.0)
기타	14 (100)	1 (7.1)			1 (7.1)		12 (85.7)
계	773 (100)	218 (28.2)	42 (5.4)	56 (7.2)	38 (4.9)		419 (54.2)

\* [ ] 안의 숫자는 %

## 5.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신청인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530건(6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기업체 121건(15.6%), 일반단체 83건(10.7%) 등의 순이었다.

국가기관의 손해배상청구가 1건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손해배상청구는 정정이나 반론청구와 달리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국가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 3-7〉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현황

(2010. 1. 1 ~ 2010. 12. 31)

구분 침해 유형	조정사건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상립	조정에 같은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가압	각하	취하
개인	530 (100)	134 (25.3)	30 (5.7)	34 (6.4)	35 (6.6)		297 (56.0)
국가기관	1 (100)			1 (100.0)			
지자체	9 (100)	4 (44.4)		2 (22.2)			3 (33.3)
공공단체	3 (100)	1 (33.3)					2 (66.7)
일반단체	83 (100)	34 (41.0)	5 (6.0)	9 (10.8)	2 (2.4)		33 (39.8)
기업체	121 (100)	35 (28.9)	5 (4.1)	8 (6.6)	1 (0.8)		72 (59.5)
언론사	23 (100)	9 (39.1)	2 (8.7)	12 (52.2)			
교육기관	3 (100)	1 (33.3)		2 (66.7)			
계	773 (100)	218 (28.2)	42 (5.4)	56 (7.2)	38 (4.9)		419 (54.2)

\* () 안의숫자는 %

인터넷신문은 2005년 하반기에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조정·중재 대상매체에 새로 포함되었다. 인터넷매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수는 시행 초기인 2005년도 45건에서 출발해 2006년 77건, 2007년 113건, 2008년 157건, 2009년 23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2010년에는 567건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약 2.4배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인터넷신문이 전체 조정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2005년도 5.4%(883건 중 48건), 2006년도 7.1%(1,087건 중 77건), 2007년도 10.8%(1,043건 중 113건)에 이르던 수치가 2008년도 16.5%(954건 중 157건), 2009년도 14.8%(1,573건 중 233건)<sup>1)</sup>, 2010년도 25.7%(2,205건 중 567건)라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조정사건이 급증한 이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2009년 8월 7일 시행)<sup>2)</sup>에 따라 그동안 조정·중재 대상매체가 아니었던 언론사닷컴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인터넷신문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해당 매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조정 및 중재신청 사건에서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조정사건 처리결과 현황

구분 연도	조정사건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157 (100)	62 (39.5)	8 (5.1)	2 (1.3)	17 (10.8)	5 (3.2)	4 (2.5)	59 (37.6)	80.4
2009	233 (100)	118 (50.6)	3 (1.3)	5 (2.1)	14 (6.0)	6 (2.6)		87 (37.3)	78.9
2010	567 (100)	190 (33.5)	12 (2.1)	14 (2.5)	29 (5.1)	43 (7.6)		279 (49.2)	80.7
계	957 (100)	370 (38.7)	23 (2.4)	21 (2.2)	60 (6.3)	54 (5.6)	4 (0.4)	425 (44.4)	80.2

\* () 안의 숫자는 %

1) 2009년 청구된 총 1,573건 중 KBS-2TV <미녀들의 수다> 루저 발언 관련한 청구 265건을 제외한 인터넷매체 비율은 17.8%(1,317건 중 233건)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구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현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명칭 변경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의 시행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조정·중재대상 매체에 새로이 포함되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의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나, 언론중재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언론중재법에 따라 2009년 말까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 수는 5개월이라는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181건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한 해에만 841건이 신청되어 전체건수의 38.1%라는 비약적 증가를 나타냈다.

〈표 5-1〉 인터넷뉴스서비스 조정사건 처리결과 현황

(2009. 8. 7. ~ 2010. 12. 31.)

구분 연도	조정사건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9	181 (100)	47 (26.0)	16 (8.8)	3 (1.7)	2 (1.1)	6 (3.3)	4 (2.2)	103 (56.9)	84.8
2010	841 (100)	77 (9.2)	69 (8.2)	6 (0.7)	13 (1.5)	48 (5.7)		628 (74.7)	88.7
계	1,022 (100)	124 (12.1)	85 (8.3)	9 (0.9)	15 (1.5)	54 (5.3)	4 (0.4)	729 (71.3)	87.7

\* ( ) 안의 숫자는 %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청구된 841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가 626건(74.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조정성립 77건(9.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75건(8.9%), 기각 48건(5.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는 대개 기사를 자체 생산하기보다는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해 기사를 단순히 전재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신청의 특징적 모습으로는 원 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에 대한 조정신청이 이뤄지는 동시에 해당사건도 함께 접수되며, 처리결과면에서도 원 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의 조정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즉, 원 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에 대한 조정이 성립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경우 역시 조정성립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사 취하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원 보도 언론사(기사제공 언론사)의 조정성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5-2〉 인터넷뉴스서비스 청구권별 처리결과및 피해구제율 현황

(2009. 8. 7. ~2010. 12. 31.)

구분 연도	청구명	조정 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가압	각하		추하
				동의	이의					
2009	정정	91	23	14	2			1	51 [42]	87.8
	반론	23	5	1			5	1	11 [11]	100.0
	추후	2	2							100.0
	손배	65	17	1	1	2	1	2	41 [29]	75.8
	계	181	47	16	3	2	6	4	103 [82]	84.8
2010	정정	474	43	53	3	5	15		355 [311]	88.9
	반론	46	2	5			20		19 [15]	84.6
	추후	11	3						8 [8]	100.0
	손배	310	29	11	3	8	13		246 [221]	88.2
	계	841	77	69	6	13	48		628 [555]	88.7

\* ( ) 안의숫자는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제6장 중재신청사건 처리결과 현황



2005년 새로이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는 ‘중재’에 관한조항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고유한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했다. 중재는 조정과달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양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분쟁을 중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재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에는 새로운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중재신청이 전혀 없었고, 사전에 양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감으로 작용해 2006년 7건, 2007년 14건, 2008년 10건 등 2005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08년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중재건수는 31건에 불과했다.

이에 위원회는 2009년부터 중재제도 활성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중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2009년에는 중재처리건수가 11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0년에도 77건을 처리했다.

### 1. 침해유형별 청구현황

2010년 신청된 중재사건 77건을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76건으로 대부분이었다. 3년치 현황을 보면, 역시 명예훼손이 90.4%를 차지했고, 그 외 초상권이 7.6%, 음성권이 1.5%를 나타냈다.

〈표 6-1〉 침해유형별 현황

연도	구분	중재 건수	명예	초상권	음성권	기타
2008		10	4	5	1	
2009		111	99	10	2	
2010		77	76			1
계 (%)		198	179	15	3	1
		100.0	90.4	7.6	1.5	0.5

## 2 청구권별 중재건수 및 처리결과

중재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정정청구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반론청구 가 28건, 추후보도청구가 12건을 나타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 중재신청건수는 2건에 그쳐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는 중재결정이 76건, 기각결정이 1건이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 2건의 경우 중재청구액 평균은 2천만 원이었고, 중재액 평균은 2백5십만 원이다.

〈표 6-2〉 청구권별 중재건수 및 처리결과 현황

연도	구분	청구명	중재 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회해결정	기각
2008		정정	1	1		
		반론				
		손배	9	9		
		계	10	10		
2009		정정	61	30	31	
		반론	25	20	5	
		추후	7	3	4	
		손배	18	12	6	
		계	111	65	46	
2010		정정	35	34		1
		반론	28	28		
		추후	12	12		
		손배	2	2		
		계	77	76		1

### 3. 매체유형별 현황

중재청구사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54건으로 7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신문, 신문, 뉴스통신, 방송순서였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중재 신청이 많은 것은 기사제공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조정이 성립되는 등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재된 동일기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신청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보다 용이하게 중재신청에 합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3〉 중재사건 매체유형별 현황

연도	구분	중재건수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신문	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2010		77 (100.0)	54 (70.1)	12 (15.6)	7 (9.1)	3 (3.9)	1 (1.3)	0

\* () 안의 숫자는 %

### 제7장 자동소제기 현황



위원회의 조정에 같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자동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40건이다. 그중 인용이 8건, 기각/각하가 7건, 취하가 3건, 진행중인 사건이 22건이다. 자동소제기된 주요 매체를 살펴보면, KBS-TV, 중앙일보, 구글 등이었다.

〈표 7-1〉 최근 3년간 자동소제기 현황 및 1심 법원 판결과 현황

연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정정반론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2008	12	4		3	4	1			3	8	1	6	3	3	
2009	24	7	2	1	12		2		4	17	3	7	8	8	1
2010	40	20	1	18				1	7	31	2	8	3	7	22
계	76	31	3	22	16	1	2	1	14	56	6	21	14	18	23

※ 인용은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 청구인낙 등을 포함함

〈표 7-2〉 2010년도매체별 자동소재기현황

매체	간수	청구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발론	손배	정정 손배	정정 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 응	취 하	각 각하	계 속
EBS-TV	1			1			1					1
KBS-1TV	2	1		1			2		1			1
KBSi	1	1					1		1			
MBC-TV	1	1					1		1			
경인일보	2	1		1		2						2
경향닷컴	2	1	1			2		2				
구글	4	2		2			4				4	
동아닷컴	1	1					1					1
동아일보	1	1					1					1
미디어오늘	3	3				3						3
빅뉴스	2	1		1				2				2
인터넷EBS	1			1			1					1
인터넷 경남여성신문	2	1		1			2					2
인터넷 환경일보	2	1		1			2		2			
전광일보	2	1		1			2					2
조인스닷컴	2	1		1			2		1		1	
중앙일보	2	1		1			2		1		1	
진주MBC-TV	2	1		1			2					2
한겨레닷컴	1	1					1				1	
함안신문	3			3			3					3
함안정통신문	1			1			1					1
함평신문	2			1	1		2		2			
계	40	20	1	18	1	7	31	2	8	3	7	22

연도별 언론조정 · 중재신청 처리현황

■ 조정

(1981.3.31 ~ 2010.12.31)

구분 연도	조정 사건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상립	조정에 길음하는 결정			조정불상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1981	44	9				12 (5)	1	2	20 (2)		39.0
1982	50	19				19 (5)		2	10 (4)		58.3
1983	71	21				22 (7)	1	1	26 (8)		52.2
1984	54	12				29 (8)	3		10 (5)		49.0
1985	59	12				28 (5)	4		15 (7)		43.6
1986	49	14				10 (2)	1		24 (11)		56.3
1987	47	10				9 (4)	1		27 (2)		34.8
1988	55	16				12 (5)		1	26 (13)		63.0
1989	121	29				35 (10)		6	51 (21)		52.2
1990	159	42				43 (10)	1	2	71 (40)		59.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48.1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5.2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56.2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59.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237 (92)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계	16,096	5,280	424	308 (29)	0	2,638 (277)	699	87	6,660 (3,894)	0	64.7
	100.0%	32.8%	2.6%	1.9%	0.0%	16.4%	4.3%	0.5%	41.4%	0.0%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건수 + 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건수 + 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수] / 조정건수(가각, 각하제외)

## ■ 중재

구분 연도	조정사건 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회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계	219 100.0%	172 78.5%	46 21.0%	1 0.5%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총 746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284건의 법의 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2009년 253건에 비해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31건(12.3%)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살자 신원공개, 자살방법 상세묘사 등 자살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2009년 93건에서 2010년 199건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2009년 97건에서 2010년 49건으로 크게 준 것(2009년 대비 49.5% 감소)으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로는 일간지와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각 96건, 149건으로 2009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09년 대비 각각 68.4%, 12.9% 증가)

### 1. 자체심의 침해유형별 분석

2010년에는 개인적 법익침해건수가 63건으로 2009년 119건에 비해 47.1% 감소한 반면, 사회적 법익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건수는 221건으로 전년도 99건에 비해 123% 증가했다. 이는 2010년도에 사회적 법익침해 유형인 자살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이 70.1%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관련 보도가 199건(70.1%),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49건(17.3%), 기타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수법 상세묘사 등) 18건(6.3%), 사생활 침해 10건(3.5%), 마약·용량·용법 등 공개 4건(1.4%),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및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 각 2건(0.7%) 순으로 나타났다.

### 2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분석

2010년 한 해 동안 시정권고 결정된 284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149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간지가 96건(33.8%), 뉴스통신 20건(7.0%), 주간지 14건(4.9%), 월간지 5건(1.8%) 순이었다.

2009년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갖춘 언론사닷컴도 시정권고 대상 매체에 포함되는 등 심의대상 인터넷신문의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2009년에는 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57건으로 2008년 121건 대비 52.9%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96건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일간지 96건 가운데 지역일간지는 74건으로, 일간지 중에서는 77.1%를 차지했다.

표 1) 연도별 시정원고 현황

1981. 3. 31. ~ 2010. 12. 31.

연도	구분 권고 건수	침해유형									종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 신원 공개	사생활 침해	미약 용량 등 공개	자살 관련 보도	기타	국가적 침해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246	8	1	19	3		1	
2006	190	4	2	69	22			3	10	73	150	9		15	16			
2007	202	1	2	80	21			14	30	44	127	11	1	20	43			
2008	289	4		48	8			30	27	97	124	19	1	31	112		2	
2009	253		1	97	6			15		93	57	15		20	132		29	
2010	284	2		49	2			10	4	199	96	14	5	20	149			
2011	66							1	23	40	19	2	1	5	39			
계	6,080	719	134	1,972	1,041	315	1,031	657	209		5,108	128	22	296	494		32	
	100%	11.8%	2.2%	32.4%	17.1%	5.2%	17.0%	10.8%	3.4%		84.0%	2.1%	0.4%	4.9%	8.1%		0.5%	